

투자권유준칙

<< 목 차 >>

제 1 편 총 칙

- 제 1조 (목 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제 3조 (방문 목적확인 및 투자자의 구분)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1 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 제 4조 (투자권유의 원칙)
- 제 5조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성향 분석 등)
- 제 6조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
- 제 7조 (설명 및 위험고지)
- 제8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제9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 제10조 (부당권유의 금지)
- 제11조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제13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제14조 (핵심설명서의 교부)
- 제15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제16조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제17조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제18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정정성 원칙 등))
- 제19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제20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제21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제 2 장 집합투자증권

- 제22조 (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 제23조 (설명 의무)

- 제24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제25조 (연계 판매)
- 제26조 (자금납입의 제한)
- 제27조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

제 3 장 투자권유대행인

- 제28조 (위탁계약의 체결)
- 제2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제30조 (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제 3 편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준칙

제 1 장 투자자문업자의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 제31조 (계약의 체결)
- 제3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 4 편 보 칙

- 제33조 (점검)
- 제34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절차)

부 칙 [2017.01.06]

- 제1조 (시행일)

[별지 제1호]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2호]

-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 I.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II. 투자자문업무 수행절차와 지침
 - III. 투자자문 담당자에 관한 사항
 - IV.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
 - V. 회사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
 - VI.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VII. 고객의 의사 파악

- 투자권유문서 수령 확인서
- 투자자문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 (계약자산의 범위)

제2조 (투자자문수수료의 산정방법)

제3조 (자문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4조 (중도 해지시의 수수료 계산 및 계약내용의 변경)

[붙임 2-1]. 투자자문수수료에 관한 기준

[붙임 2-2]. 투자자문담당자, 임원, 대주주에 관한 사항

[별지 제3호]

- 투 자 자 문 계 약 서

제 1조 (목 적)

제 2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대상)

제 3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

제 4조 (투자자문의 제공방법)

제 5조 (자료의 제공)

제 6조 (이해상충방지체계)

제 7조 (재위탁 금지)

제 8조 (“을”의 금지행위)

제 9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제10조 (투자자정보 보호)

제11조 (통지의무)

제12조 (투자자문 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

제13조 (투자자문 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제14조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수탁업무 처리 기록 유지 의무)

제15조 (“갑”의 의사 등 사전파악)

제16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제17조 (투자자문담당자 현황)

제18조 (계약기간)

제19조 (계약의 해지)

제20조 (계약의 내용)

제21조 (신의성실의무)

제22조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비밀유지의무)

제23조 (면책 및 보험관련 사항)

제24조 (운용 상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 (기타 변경 사항)

제26조 (관할법원)

[별지 제4호]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별지 제5호]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별지 제6호]

-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I. 고객의 재무현황

II. 거래의 목적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V. 위험 관리 능력

VI. 금융거래수준

[별지 제7호]

- 펀드상품 판매 매뉴얼

I. 판매의 단계

II.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붙임 7-1]. 판매절차

[붙임 7-2]. 투자자정보확인서

[붙임 7-3]. 투자자확인서

[붙임 7-4].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방법

[붙임 7-5]. 투자자 체크리스트

[붙임 7-6]. 판매 세부 절차 등 요약

[별지 제8호]

-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

[별지 제9호]

-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별지 제10호]

-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별지 제11호]

-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투 자 권 유 준 칙

제 1 편 총 칙

제 1조 (목 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 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일반투자자인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 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 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 가.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1호]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6호]의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 나. 정보미제공 고객 : 회사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2.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 ④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에 따라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⑤ "일중매매거래"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 ⑥ "시스템매매"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고 있으면 해당 소프트웨어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도 시스템매매로 본다.
- ⑦ "온라인 증권거래"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컴퓨터 등 유·무선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 ⑧ "포트폴리오 투자"란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할 것
 2.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운용전략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회사 또는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 ⑨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파생상품
 2. 파생결합증권
 3.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나 목의 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제 3조 (방문 목적확인 및 투자자의 구분)

- ①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회사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3.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4. 회사는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편 투자권유 준칙 일반

제 1 장 공통 투자권유 준칙

제 4조 (투자권유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②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한다.
- ⑤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 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 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제 5조 (투자자 정보 파악 및 투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별지 제6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 제1호]의 Part I)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인 경우 3단계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인 경우 2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기초정보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평가결과 투자성향"이라 한다)과 고객의 위험선호도([별지 제1호]의 Part II)에 따른 투자성향(이하 "위험선호 투자성향"이라 한다)이 상이한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평가결과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별지 제4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권유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3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라목의 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관련기록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 6조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은 투자정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7조 (설명 및 위험고지)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투자유의사항"이라 한다)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유의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종류, 종

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 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④ ③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의 [붙임 3] 참조

제10조 (부당권유의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③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3.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 권유는 다음의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장내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장외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 다. 신탁계약 :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금전)에 대한 신탁계약, 법 제 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지 상권·전세권·부동산임

차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 ⑤ 고객(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⑥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⑦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229조 제 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행위

제11조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한 금지행위 등)

임직원 등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증권
- ② 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증권
- ③ 투자적격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 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
- ④ 신용거래 및 예탁재산 규모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권거래
- ⑤ 파생상품 등

제12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 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 회사가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제14조 (핵심설명서의 교부)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 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은 제외한다)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관련 위험사항이 포함된 핵심설명서 및 Quick Guide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하여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Quick Guide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명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특칙(정정성 원칙 등))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 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등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별지 제5호] 참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별지 제7호] 참조)
- ④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등(이하 이항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2.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 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등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⑤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이자율 스왑

나. 옵션매수

2. 개인사업자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이외의 고객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다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가. 이자율 · 통화 스왑

나. 옵션매수

다. 선도거래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 인 위험회피 대상 기초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공한 고객 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⑦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⑧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 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 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위험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 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21조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제 2 장 집합투자증권

제22조 (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 ① 회사는 영업점에 자금 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특정 국가·지역 또는 특정 종류의 자산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대상 자산 및 주요 투자전략
 3.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최대손실 가능금액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등 환매에 관한 사항
 5. 고객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6.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 시 공시에 관한 사항
- ②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고객 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 위험 해지 여부 및 목표 환 해지 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3.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 증시상황 등의 특징
 4. 환 해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환율이 환 해지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고객이 직접 환 해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임직원 등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법 제229조제3호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 및 투자 위험
 2. 기타 해당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
- ⑤ 회사는 제3항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임직원 등이 해당 집합 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 증권시장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동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투자권유 임직원 등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투자권유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연계 판매)

임직원 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판매나 계약의 체결, 기타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이하 "연계판매"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되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②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
- ③ 고객에게 환매제한 등의 부당한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
- ④ 집합투자증권의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자금납입의 제한)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집합투자증권취득자금을 수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② 판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회사 또는 임직원이 선납하는 행위
- ③ 자금의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제27조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한 금지행위)

회사 및 임직원 등은 집합투자기구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고객(일반투자자)을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게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 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회사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회사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회사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④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을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제 3 장 투자권유대행인

제28조 (위탁계약의 체결)

- ① 회사가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범위
 2.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3.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이 준칙을 준수한다는 내용

제2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는 행위

6.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7.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9.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 하는 행위
 11.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2.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14.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15. 고객이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6.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17.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18.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행위
 19.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고객이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기타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22. 영업점에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공간을 설치하는 행위
 23. 업무 보조원을 채용하는 행위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별표 1]의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협회로부터 등록의 효력정지 조치를 부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2.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의 효력정지 기간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이수 시 까지 로 한다.
-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 3 편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준칙

제 1 장 투자자문업자의 및 투자일임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31조 (계약의 체결)

- ①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 양식으로 미리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2.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 등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 이 부담하는 책임 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 조 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별지 제8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3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③ 계약시에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4 편 보 칙

제33조 (점검)

회사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절차)

- 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 절차를 제정 ·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협회가 정한 [별지 제7호]의 "펀드 표준판매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임직원 등의 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17.01.06]

제 1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26 7월 1 시행한다.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 ☐ 고객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투자회사는 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참조하여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본 「투자자문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I.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1.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은 투자자문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 판단등에 대한 자문
 - 나. 금융투자상품등의 자산배분, 투자전략의 수립에 대한 자문
 - 다. 금융투자상품의 주선, 인수 등에 대한 자문
2.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
 - 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개 예정인 회사의 주식
 - 다.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중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것
3.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사는 직접대면, 전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문서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제공하게 됩니다.
 - 나.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합니다.
 - 다. 거래 증권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II. 투자자문업무 수행절차와 지침

1. 당사는 고객의 계약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문 서비스의 소개 -> 투자자문 계약 권유문 교부 ->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및 수수료 납부 -> 투자자문 사후관리 (성과보수 수취 등 포함)
2. 당사는 계약 체결 전에 회사소개서와 상품 소개서를 제출하여 고객의 성향에 맞는 상품 군을 확인한 후 고객별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제시합니다.

III. 투자자문 담당자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투자자문 담당자의 성명과 주요경력은 [별지 제2호]의 [별첨2]와 같습니다.
2. 담당 임직원은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

1. 당사와 고객 또는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고객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
 - 다. 투자자문자산의 운용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
 - 라.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마. 투자자문담당자를 고객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행위

2. 당사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이를 방지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 가. 이해상충 요소의 상시 파악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나. 임직원 및 회사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을 제정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다. 비밀정보 관리를 위해 사내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라. 내부통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매월 및 수시로 내부통제제도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 조치가 수행되게 됩니다.

V. 회사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가.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나.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다.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라.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마.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열거된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
2. 고객의 의무와 책임
 - 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당사의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나. 고객은 당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투자자문 내용을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 다. 투자자문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VI.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와의 투자자문 계약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수수료는 [별지 제2호]의 [별첨 1]과 같습니다.

VII. 고객의 의사 파악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문서 수령 확인서

_____은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인에게 투자권유문서를 (____제공하였고____) 본인은 그 내용을 (____설명받고,____숙지하였음____)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고객명 : _____ (서명)

투자자문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1조 (계약자산의 범위)

자문수수료 산정대상이 되는 계약자산은 고객과 당사가 투자자문계약시 계약자산으로 합의한 자산으로 한다.

제2조 (투자자문수수료의 산정방법)

투자자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범위와 고객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투자자문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성과 수수료로 구분된다.

계약자산의 범위	대상 기간	운용규모	자문수수료	비 고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제3조 (자문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1. 고객은 자문수수료를 4회에 걸쳐 1/4씩 매 분기말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한다.
2. 계약일이 속한 분기의 지급할 자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이 속한 분기의 지급할 자문수수료는 연간자문수수료에서 기지급 자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의 시작일(직전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한 분기의 자문수수료 지급은 제2항과 달리 분기 전체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성과 수수료는 대상 기간동안 정해진 벤치마크 또는 Hurdle Rate대비 초과 수익률에 대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4조 (중도 해지시의 수수료 계산 및 계약내용의 변경)

1. 고객 또는 회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로 투자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수수료는 연간 자문수수료를 계약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자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성과 수수료의 계산도 중도해지일까지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2. 기타 금융상품의 서비스를 계약자산의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甲과乙이 상호 합의하여 개별 계약으로 정한다.

[붙임 2-2]

투자자문담당자, 임원, 대주주에 관한 사항

[투자자문 담당자 현황]

성 명	직 책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전문인력 해당사항

* 담당 임직원은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대주주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계			

투 자 자 문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로렌스투자자산운용㈜ (이하 “을”이라 한다)는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조 (목 적)

“갑”와 “을”은 투자자문 해당 자산운용에 관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 3조에 의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은 제18조에 의한 투자자문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 2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대상)

“을”이 “갑”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의 대상은 제18조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 3조 (투자자문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본건 투자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본 계약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갑”의 대상자산 운용을 위한 투자대상 종목군(이하 “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추천 등 투자자문 서비스
2. “갑”의 대상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
3. 대상자산 운용과 관련된 종목추천, 시황, 경제전망에 관한 조언
4. 기타 본건 투자자문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

제 4조 (투자자문의 제공방법)

- ① “을”은 본 계약 제3조에 의해 투자의 판단과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을 하며, “갑”에게 1회 이상 투자자문 결과보고서 또는 관련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송신으로 교부한다.
- ② “을”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포트폴리오를 긴급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자료의 제공)

“을”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투자자문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을”이 본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갑”에게 요청한 자료
2.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 6조 (이해상충방지체계)

“갑”과 “을”은 고객 또는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7조 (재위탁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 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 8조 (“을”의 금지행위)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을 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 또는 “을”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2. “을”의 다른 고객이 자문을 요청한 자산과 “갑”이 운용 중인 고객의 자산과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3. “갑”의 동의 없이 “을”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자문하는 행위
4. 투자자문의 범위 및 투자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 자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6. 증권 투자자문에 관해 “갑”에게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7. 근거 없이 허위사실 및 기타 풍설을 유포하는 행위
8. 자본시장법 제174조 ~ 제1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
9.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10.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 9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을”은 업무 수탁으로 인해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로써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투자자정보 보호)

“을”은 “갑”의 어떠한 고객 관련 정보도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3자에게 유출해서도 안된다.

제11조 (통지의무)

- ① “갑”은 “을”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선정된 투자자문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을”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③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18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유선으로 한다. 단, “운용사”가 사전에 그 통지장소와 방법을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자문 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

투자자문 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은 “을”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투자자문 계약자산의 운용은 “갑”의 최종판단에 따라 “갑”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제13조 (투자자문 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을”은 “갑”에 대한 투자자문 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문 자산 내용 등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을”은 투자자문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갑”에 대한 투자자문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수탁업무 처리 기록 유지 의무)

- ①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 시 내부 운용리스크나 전산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확보해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한다.
- ② “을”은 투자자문 서비스 등의 수탁업무 수행 시 그 수행기록을 1년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15조 (“갑”의 의사 등 사전파악)

“을”은 “갑”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으로 부터 투자목적, 위험선호 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갑”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당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에 관한 사항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② 대주주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주 명	소유주식 수	지분율
계			

제17조 (투자자문담당자 현황)

“갑”의 계약자산을 담당할 “을”의 투자자문업무 담당자의 성명 및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직 책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전문인력

제1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단, 1년 자동 연장 시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은 16조의 계약기간 중에도 사전에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1개월 전의 예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사소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유를 불문하고 대상 자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기타 경영 판단상 본건 투자자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20조 (계약의 내용)

“갑”과 “을”이 합의한 이 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 부 내 용
1. 계약의 종류 : 투자자문계약 2. 투 자 자 명 : _____ 3. 제 약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투자자문 수수료 : (“갑”과 “을”이 합의한 수수료로 별도 정함) 가. 기본수수료 : 나. 지급방법 (투자자문 수수료의 지급방법은 일시납 또는 분납(연 4회)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한 시기로 정한다.) 다. 지급계좌 : 5. 투자자문담당자 : 주 소 : 전 화 : 전자우편: 6. “갑”에 대한 통지 장소 주 소 : 업무담당자 : 전 화 : 전자우편: []

제21조 (신의성실의무)

- ① “갑”과 “을”은 투자자문 서비스의 이용과 제공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자문에 응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2조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비밀유지의무)

- ① 본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을”의 소유로 한다
- ② “갑”은 “을”이 투자자문 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 서비스의 내용을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면책 및 보험관련 사항)

- ① “을”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 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면한다.
- ② “을”은 “갑”으로 부터 위탁 받은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 “갑”과 “을”은 업무를 주관하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본 계약 중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④ 본 계약에 의해 투자자 또는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갑”과 “을”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운용 상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갑”은 “을”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계약 체결사항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을”에게 업무개선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상호 위수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내부통제관련부서 등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기타 변경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관할법원)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본 계약서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성명(상호) :

주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 서명/인

을 성명(상호) : 로렌스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25, 하남빌딩 606호

주 민 등 록 번 호 : 581-87-02702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 박기덕 서명/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주 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 종목, 관리종목				
집합투자증 권		주 식 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펀드				
선물옵션		선물옵션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Intermediat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거래(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거래(투자) 경험 등 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기 명 날인(서 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며, 파악한 정보는 고객의 투자(거래)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적합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인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거래) 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부터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님의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의게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여부	예 ☐	아니오 ☐	기존정보와 동일 ☐
투자권유 희망여부	예 ☐	아니오 ☐	
고객 유형	상장기업 ☐	비상장기업 ☐	개인사업자 ☐

I. 고객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총계	
외화자산 총계	
부채총계	
외화부채 총계	
연간수출총액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	☐	☐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전문가 수준) :	중	하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 급 :	성 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전문가 수준) :	중	하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고객님의게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의게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아니오	

*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고객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orward)				

<펀드상품 판매 매뉴얼>

본 펀드상품 판매매뉴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가 판매사의 영업점을 통해 공모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투자자·법인투자자, 사모펀드, 온라인·전화판매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펀드 판매매뉴얼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 판매의 단계

- 판매사는 판매의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세부 절차와 주의사항을 마련하여야 함
 - 표준 판매매뉴얼에서는 판매의 단계를 [붙임 1]과 같이 6단계로 구분

1단계(투자자정보 파악) — 2단계(투자자 유형분류) — 3단계(투자 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 4단계(펀드에 대한 설명) — 5단계(투자 자 의사 확인) — 6단계(사후 관리)

II. 판매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주의사항

□ 1 단계 : 투자자정보 파악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이하 "투자자정보"라 함)을 파악

- ① 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 방문
- ②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판매(상담) 전담창구로 안내
 -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 ③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 *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이동하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로 대우

<전문투자자의 범위>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3-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3-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3-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3-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3-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8. 금융투자업자(법 제 22 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
- 3-9. 법 제 324 조 제 1 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3-10. 종합금융회사
- 3-11. 법 제 355 조 제 1 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
- 3-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3-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3-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3-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3-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3-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3-18. 제 3-1 호부터 제 3-17 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5-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5-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5-5. 협회
- 5-6. 법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 5-7. 법 제 373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 5-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 5-9. 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 5-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5-1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5-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 5-10 호 및 제 5-11 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5-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5-14. 지방자치단체
- 5-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5-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100 억원 이상일 것
 -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5-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
 -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 억원 이상 일 것
 -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 년이 지났을 것
 -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5-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 5-1 호부터 제 5-17 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④ 투자자정보 확인서([붙임 2] 참고)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파악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금융투자업규정> 중

제 4-20(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 68 조제 5 항제 13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법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위반하는 행위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 증권, 지방채 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증권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투자자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투자자. 다만,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법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적용한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관련 법무법인 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제 5 호 라목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자통법 제 46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위반하여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근거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시에는 자통법 제 46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임. 즉, 불건전 영업행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자통법 제 46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위반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자통법 제 64 조)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임

- 판매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기록보관)에 따른 <별표 4>에서는 법 제 46 조제 2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일반정보에 대해 10 년 이상 보존하도록 규정

□ 2단계 : 투자자 유형 분류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담결과 등을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

(예) 안정형, 위험중립형, 공격투자형 등

⑥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음의 5단계로 구분([붙임 4] 참고, 회사에 따라 유형 분류 기준, 등급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PART 1>

- | | |
|----------------------------|----------------------------|
| · 20 점 이하 : 1 단계 | · 20 점 초과 ~ 40 점 이하 : 2 단계 |
| · 20 점 초과 ~ 60 점 이하 : 3 단계 | · 60 점 초과 ~ 80 점 이하 : 4 단계 |
| · 80 점 초과 : 5 단계 | |

<PART 2>

- | | |
|-------|---------|
| · 안정형 | · 안정추구형 |
|-------|---------|

- 위험중립형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PART 1 과 PART 2 결과 중 하위 값 적용(표준투자권유준칙 제 5 조)

- 1단계(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2단계(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 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3단계(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4단계(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5단계(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투자성향을 분류(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라목에 근거)

-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한 투자자 유형 분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펀드 권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경고) 해야 함

⑦ 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그 의미를 설명

*

- 회사의 투자자 위험 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투자자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며, 어떤 펀드(상품)가 권유대상인지 등
-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 3단계 :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 선정, 투자 권유

⑧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 선정 및 투자권유

투자자의 유형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기 위한 상품별 위험 등급
1 단계 (안정형)	상품 등급 = 1 단계
2 단계 (안정추구형)	상품 등급 ≤ 2 단계
3 단계 (위험중립형)	상품 등급 ≤ 3 단계
4 단계 (적극투자형)	상품 등급 ≤ 4 단계
5 단계 (공격투자형)	관계 없음

- 판매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각 펀드별로 위험 등급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위험 등급

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펀드를 권유해야 함

- 펀드 상품에 대한 위험 분류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예 : 판매사 내부의 펀드 위험 평가 위원회, 펀드 평가회사의 평가 정보 활용, 투자설명서의 위험 등급 적용 등)

- 펀드별 위험 등급 부여시 고려사항

펀드 종류별 위험 등급 부여(예 : MMF - 1 등급, 채권형 - 2 등급, 혼합형 - 3 등급, 주식형 - 4 등급 · 5 등급)뿐만 아니라 동일 종류(유 형) 내에서도 투자대상자산의 성격, 투자전략, 투자대상지역 등에 따라 위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예 : ELS 펀드 중 최대손실규모가 -∞인 경우 5 등급 부여 등)

- 다만,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인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할 수 있음([예] 3단계 위험 등급 투자자에게 1단계 및 5 단계 위험 등급의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권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이 투자자의 위험 등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중평균 위험 등급 변화에 대응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 주기(또는 투자자의 펀드 거래시)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여부를 투자자에게 안내 또는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멀티클래스펀드인 경우 투자자의 투자방식(거치식, 임의식, 적립식 등)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 투자권유

※ 협의의 적합성원칙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펀드를 권유해서는 아니 됨

- 투자자정보 파악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 위험 등급 파악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 등급 이상의 펀드 또는 펀드 자체의 투자권유를 거부할 수 있음

* (예)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투자자가 4 등급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가능기간이 6 개월 이내인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금(주택 전세 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록 금 등)을 3 등급 이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위 예는 일반적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회사에 따라 특정한 금지 사유 등을 정할 수 있음

- ⑨ 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 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를 요구했다는 점,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판매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붙임 3] 참고)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판매사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확인서에는 위의 내용을 기재

□ 4단계 :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 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방법 등을 설명

⑩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 ※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당해 권유행위가 (i)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ii)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1.11. 선고 93 다 26205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 다 50312 판결 등)

-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펀드의 명칭 및 종류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가격변동위험, 투자기업의 부도위험, 금리변동위험) 외에 환율변동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펀드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헤지 비율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별 투자비용
-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증시 상황 등

※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다음 사항 추가 설명

- 펀드의 주요 특성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대상인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의 주요 특성(구체적인 구조, 투자대상 등)
- 펀드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펀드의 투자 대상인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
- 투자대상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

- 회사가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펀드(또는 펀드와 관련된 계약) 또는 투자자가 매수하는 펀드가 투자원본을 초과할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여야 함
-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붙임 5]의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 5단계 : 투자자 의사 확인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를 중단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시 : 투자설명서 등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⑪ - a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 절차 3단계 및 4단계 반복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 ⑪ - b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방식(거치식 · 적립식 등 / 자동이체 · 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 · 관리. [붙임 5]의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 ※ 판매사 및 판매 임직원 주요 금지행위
 - 투자권유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 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 투자증권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거나 그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다만,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위 사항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 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자기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 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는 행위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이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예컨대,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2004.1.15. 선고 2002다51517 판결))
- 투자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행위(서울중앙지법 2006.3.22. 선고 2006가합63582 등)
- 투자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임의의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서울고법 2003나45825 판결 참조)

□ 6단계 : 사후 관리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⑫ 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 ※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한 점검

- 판매사는 자신이 부여한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초의 부여 등급과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영업점 게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함

< 판매 절차 >

1 단계 [투자자정보 파악] ·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해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	2 단계 [투자자 유형 분류] · 투자자정보 확인서, 상담결과 등을 점수화(Scoring system)하는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일정 유형으로 분류 (예) 안정형, 위험중립형, 공격형투자 등
3 단계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선정] ·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펀드 선정, 투자권유	4 단계 [펀드에 대한 설명]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펀드의 운용대상자산 등 운용전략, 원본손실위험 등 투자에 따른 위험, 보수·수수료 및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환매 방법 등을 설명
5 단계 [투자자 의사 확인] ·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치 않는 경우 권유중단 ·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등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6 단계 [사후 관리] · 투자자의 펀드 매수 이후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에 하여 유지·관리, 주기적 잔고통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제공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고객님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해 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가장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잘못된 답변 또는 불성실한 답변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님의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정보 변경여부〉

☐ 기존정보와 동일	☐ 정보 변경
-----------------------------------	--------------------------------

〈기초정보〉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19 세 이하 ☐ 20 세~40 세 ☐ 41 세~50 세 ☐ 51 세~60 세 ☐ 61 세 이상	
2. 고객님의게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6 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1 년 미만 ☐ 1 년 이상~2 년 미만 ☐ 2 년 이상~3 년 미만 ☐ 3 년 이상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 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을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을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게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은 수준 : 투자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 10% 이하 ☐ 10% 초과 ~ 20% 이하 ☐ 20%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위험선호도>

Part 2
1.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판매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대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기타>

Part 3
고객님께서 파생 상품, 파생 결합 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투자기간 (년 월)

주의사항

본 투자자 질문지는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 회사에서 제공 되었으며, 동 투자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고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객님께 적합한 펀드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만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저의 금융회사에 의하여 기밀로 보호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PART I 결과	SCORE 합계
☐ 1 단계 - 안정형	20 점 이하
☐ 2 단계 - 안정추구형	20 점 초과 - 40 점 이하
☐ 3 단계 - 위험중립형	40 점 초과 - 60 점 이하
☐ 4 단계 - 적극투자형	60 점 초과 - 80 점 이하
☐ 5 단계 - 공격투자형	80 점 초과
PART II 결과	
최종 투자자 리스크(위험) 등급	

본인은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으며, 본인이 제공한 정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서명/인	날짜	년 월 일
--------	------	----	-----------------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변경 또는 신규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희망여부>

☐ 투자권유 희망	☐ 고객정보 제공 ☐ 고객정보 미제공
☐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정보가 기존 정보와 동일 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일시 : 년 월 일

고객명 : (인 또는 서명)

상단자명 : (인 또는 서명)

<투자자 확인서>

☐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본인은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으로부터 본인이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제시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할 경우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은 본인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서명 :

☐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 선택 확인

본인은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른 본인의 투자자 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펀드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으로부터 본인이 지정한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본인에게 부적합하므로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본인이 지정하는 펀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본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으로부터 어떠한 투자권유도 받지 않았으며, 상기투자가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본인이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거래와 관련하여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어떠한 업무처리도 로렌스투자자산운용(주)이 본인에게 본 거래가 적격하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서명 :

<투자자정보 확인서 Scoring 방법>

☐ 문항별 배점

- 1 번 : ①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2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3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 5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 점,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6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 7 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 점, ④로 응답한 경우 6 점
- 8 번 : 배점은 없으며, 투자자의 선택 결과를 적용

☐ 점수 계산 방법

- PART 1 1 번부터 7 번까지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7 번까지의 합이 26 점인 경우, $26 \text{ 점} / 32 \text{ 점} \times 100 = 81.3 \text{ 점}$

- PART 2 선택 결과를 적용

(예) 안정형, 적극투자형 등

- PART 1 과 PART 2 결과 중 하위 값 적용

(예) - PART 1 4 단계, PART 2 3 단계인 경우 → 3 단계 등급 적용
- PART 1 2 단계, PART 2 3 단계인 경우 → 2 단계 등급 적용
- PART 1 3 단계, PART 2 3 단계인 경우 → 3 단계 등급 적용

☐ 등급 부여

- 점수 계산 결과에 따라 1 단계 ~ 5 단계 등급 중 부여

·20 점이하 : 1 단계	·20 점초과 ~ 40 점이하 : 2 단계
·40 점초과 ~ 60 점이하 : 3 단계	·60 점초과 ~ 80 점이하 : 4 단계
·80 점초과 : 5 단계	

〈투자자 체크리스트〉

투자자 체크리스트는 펀드 거래에 있어 투자자가 최소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판매사로부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들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므로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판매 임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확인란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판매 임직원에게 다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 펀드의 명칭 및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 들었습니다.
-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펀드 투자시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펀드 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및 환매연기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 소득의 과세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대하여 설명 들었습니다.

※ 그 외 회사가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기재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투자자 성명 :	판매자 성명 :

< 판매 세부 절차 등 요약 >

1 단계

①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 방문

②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펀드 상담 또는 매수를 원할 경우 펀드 판매(상담) 전담창구로 안내

- 펀드 판매(상담)는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는 임직원만 가능

③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확인

- 일반투자자로 이동이 가능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과 일반투자자로 이동할 경우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고지

④투자자정보 확인서 또는 상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파악

-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투자자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판매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설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투자자정보 응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⑤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 확인서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성향분석을 거부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를 투자권유(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기재
- 법 제 93 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 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근거)

2 단계

⑥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구분

- 1 단계(안정형), 2 단계(안정추구형), 3 단계(위험중립형), 4 단계(적극 투자형), 5 단계(공격투자형)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된 정보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투자성향을 분류

⑦ 투자자에게 본인의 위험 등급(투자성향)을 알려주고 해당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및 그 의미를 설명

- 위험 등급이 낮은 투자자를 높은 위험 등급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3 단계

⑧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 유형 분류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 상품 선정 및 투자권유

- 판매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에 대해 각 펀드별로 위험등급을 부과해야 하며, 해당 위험 등급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해 펀드를 권유해야 함
- 멀티클래스펀드인 경우 투자자의 투자방식(거치식, 임의식, 적립식 등)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클래스 제시(권유)

⑨ 투자자가 투자자 유형 분류에 따른 판매사 권유 펀드를 거부하고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 수준의 펀드를 권유(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더 높은 위험 수준의 펀드를 요구했다는 점, 해당 펀드의 투자위험 정도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해 높아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므로 판매사가 이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

4 단계

⑩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투자권유 펀드의 주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만을 이용할 수 있음
-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 펀드의 명칭 및 종류
 - 펀드의 운용개념 및 방법
 -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당해 펀드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 당해 펀드의 구조와 성격에 따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펀드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펀드의 환매방법, 환매제한, 환매수수료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자 또는 펀드가 부담하는 각종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소득의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의 주요 내용 변경에 따른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익자 총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설명)
 - 기타 법령 및 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사항
- 해외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설명 필요
- 투자자에게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설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

5 단계

⑪-a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해당 펀드의 권유를 중지

- 다른 펀드 또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판매절차 3단계 및 4단계 반복
-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 재차 투자자 의사 확인 후 투자권유 종료

⑪-b 설명을 들은 투자자가 펀드 매수를 원할 경우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 징구, 투자금 수령, 통장 교부 등 펀드 매수 절차 진행

- 투자방식(거치식, 적립식 등 / 자동이체, 자유납입 등) 상담, 결정
- 회사는 펀드 판매 임직원의 성명(실명), 직위,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고, 투자자가 펀드에 대해 수시로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펀드 거래 관련 제반 서류 보관·관리.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사용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사본 1부 제공하고 원본은 판매사가 보관

6 단계

⑫투자자 사후관리 서비스

- 수동적 서비스 :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 적극적 서비스 :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상품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 판매사는 자신이 부여한 펀드 위험 등급에 대해 회사가 정한 주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초의 부여 등급과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영업점 개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함

<투자권유대행인 의무 표시사항>

본인은 ()회사로부터 ()에 대한 투자업무업무를 위탁 받은 ()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일반 임직원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업무상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직접 수취합니다.
3.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습니다.
4.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지 못합니다.
6. 제 3 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
7.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8.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0.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1.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2.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3.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14. 본인 또는 제 3 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15. 고객이 법 제 174 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 176 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 178 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아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1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17.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18.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할 수 없습니다.
19.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의 투자권유 이외에는 다른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20.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또는 실장 등의 명칭·명함 또는 표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을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
22. 회사 영업점내에 투자권유대행인의 독립 또는 전용공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23. 업무 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¹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 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수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¹ 회사가 본 표를 참조하여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²⁾>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의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매매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²⁾ 회사가 본 표를 참조하여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를 작성하도록 함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제 4-13 조 관련)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기간
영업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법 제 46 조제 2 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 -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 ·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에는 1 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별표 2 및 별표 3]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③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 상근임원의 승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10년
	2. 분쟁 등 제 1 호외에 투자자와 관련된 자료 ① 투자자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투자자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② 투자자예탁재산 보관기록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여부 등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5년
	3.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주문일부터 1년간 보관) - 투자자별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② 투자자의 매매거래기록 -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제세공과금 등) ③ 일일정산대장 등 그 밖에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	10년

	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 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자산 대여·대차 등 운용지시서,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 관리위탁계약서, 부동산 등 매매·임대차등 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예금·보험금등에 대한 근질 및 근저당 등 담보권설정서류, 이자·공사비·등기비용·제세공과금 등 납부서류 등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련자료 -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기준가격 오류 수정 및 재 공고에 관한 기록 등 ③ 신탁재산 운용관련자료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신탁재산명세서, 신탁재산운용내역서 등	10 년
	5.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관련 자료 ① 업무위탁 관련자료 - 업무위탁계약서(Delegation Agreement),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자격증빙서류 ②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 - 조사분석자료, 배포시기(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3 년
재무	6.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①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황, 변경내역 ③ 증권보유기록(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 ④ 증권 매매기록(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파생상품 거래기록(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 -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i>arm's length rule</i>) 적합여부, 거래대상, 거래시기, 수량·가격, 거래사유	10 년
업무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 년
	8. 법 제 161 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는 거래 관련 자료	5 년
	9.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 년
	10. 자산구입 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 년

내부 통제	11.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자료 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사항 -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 ③ 내부감시활동에 관한 기록 - 내부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5 년
	12. 임원 · 대주주 · 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인력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	5 년
그 외	13. 다른 법령에서 작성 ·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 · 서류 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민원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 ③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인가, 각종 지침, 비조치의견서 등 ④ 각종 계약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 투자자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다만, 기존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 유지·관리해야 함

※ 상충되는 답변에 대한 처리 문제

1 번부터 8 번까지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문항 중 상충되는 답변 발생 시 이에 대한 재확인 또는 무효 처리 등 절차 필요
 (예) 7 번 문항에 대해 1 번으로 응답하고, 8 번 문항에 대해 5 번 응답

투자자정보 응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과 위탁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1) 대리인이 전체적으로 투자자정보 응답
- 2) 대리인이 부분적*으로 투자자정보 응답
 - * 대리인이 위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 한정
- 3) 대리인이 투자자정보 응답 없이 펀드 선택(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선택하는 경우 포함)

- 다만, 회사는 위임장 양식에 투자자정보 응답' 펀드(상품) 선택 등의 위임내용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법 제46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투자자정보

※ 대리인의 적합성원칙 적용 문제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업무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⑤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붙임 3] 참고)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음(회사의 정책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음)

- 확인서에는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투자자가 판매사의 투자성향분석을 거부할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를 투자 권유(추천) 할 수 없다는 내용", "그럼에도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한다는 내용",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 정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 을 기재

※ 다만,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투자자정보 파악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 할 수 없음(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근거)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규정> 중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영 제68조제5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라목(3) 본문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투자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 ~ (4) (생략)

(5)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거래